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5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이해식 · 박상혁 · 이연희
한민수 · 노종면 · 이상식
양부남 · 강선우 · 윤준병
홍기원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심의 대상 기록물을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 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 함. 더불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3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7명의”를 “15명의”로, “2년으로”를 “3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0인 이상을民間 위원으로 위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록물공개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생략)</p> <p>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7명의</u>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u>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u>위원은</u>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후단 신설></u></p>	<p>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5명의</u>----- ----- -----<u>3년으로</u>----- -----.</p> <p>③ -----<u>위원은</u>----- <u>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u> <u>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u> <u>로서-----</u> ----- ----- -----.</p> <p><u>이 경우 위원 중 10인 이상을</u> <u>민간 위원으로 위촉한다.</u></p>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